##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206 발의연월일: 2020. 11. 11.

발 의 자:이용우·고영인·강준현

홍정민 · 이용빈 · 민병덕

진성준 · 서영석 · 김주영

송영길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(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)로 변경하였는데,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(안 제23조의11).

법률 제 호

###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3조의11제2항 전단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의11(청산) ① (생 략)	제23조의11(청산) ① (현행과 같
	승)
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	②
이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상태를	
조사하고 재산 목록과 <u>대차대</u>	<u>재무상</u>
<u>조표</u> 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	태표
승인을 받아야 한다. 청산 사무	l
가 종결된 때의 결산보고서에	
관하여도 또한 같다.	
③ ~ ⑥ (생 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